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30일

농소2동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**	최** 1975-10-01	울산광역시 북구 신기3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10-30

